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2022년 11월 30일
의회 운영 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년 11월 10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10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(2022년 11월 30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장규원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2022. 1. 13. 시행)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 개정 (2022. 1. 13. 시행)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, 보상금 지급 조건 중 '직무'의 범위가 확대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의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(안 제1조).
-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 조건 중 직무 범위 변경사항을 반영함(안 제2조제1호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김하영

나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「지방자치법」(2022. 1. 13. 시행)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(2022. 1. 13. 시행)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상위법 근거조항에 맞도록 상위법 인용 조문 반영(안 제1조, 제2조) 및 약칭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3조, 제4조, 제6조, 제9조).
- 기존 「지방자치법」에서 회기 중 상해·사망 등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 반면, 개정 「지방자치법」은 지방의원의 직무로 인한 상해·사망 등에 보상으로 규정하여 보상의 범위를 넓게 확대해석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